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시설 등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 등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7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의료시설 등에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 등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¹⁾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현행 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을 두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본문)2)3),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가. 소화기구
 - 나. 비상경보설비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 마. 피난구조설비

이는 건축 당시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①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제13조제1항제1호) 및 ② 공동구⁴⁾,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老幼者) 시설, 의료시설(제13조제1항제2호)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단서)⁵⁾,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이고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건축물 구조, 인테리어 등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음.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3) 동 특례조항은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음.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895호, 2003.5.29., 제정, 2004.5.30. 시행] (제11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조문 내용은 각주 2) 참조

**<제13조제1항제1호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소방시설>**

구 분		종 류
소방 시설 (제1호)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한편, 현행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老幼者) 시설, 의료 시설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특정소방대상물들이며, 대형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대책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된 것들임.

**<제13조제1항제2호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단위: 개)

구 분		현 황
특정소방대상물 (제2호)	공동구	31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1,194
	노유자 시설	6,125
	의료 시설	1,478

(자료: 소방청)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제13조제1항제2호)의 특징>

특정 소방 대상물	1. 특징 2. 소급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계기 3. 현재 추진 중인 상황 4. 비용 지원시 지원 주체 5. 법적 근거(현행법 제13조제1항 외의 법적 근거)
공동구	1. 공동구는 지역개발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며, 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음. 2. KT 아현지사 화재사고('18.11.24.) 및 통신·전력구 실태점검 결과 공동구 및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필요* *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관련 관계기관 화재안전대책 마련('19.12.6.) 3. 소급대상 31개소 100% 추진완료 4. 공동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제44조의2⁶⁾) - 자체 예산으로 비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⁷⁾
전력 및 통신 사업용 지하구	1. 기존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20.12.10.시행) 2. KT 아현지사 화재(2018.11.24.) 관련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3. 2년 이내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22.12.9.), 1194개소 100%완료 4. 한국전력공사, KT에서 관리하고 있고, 비용 부담 * 지원하지 않고 자체 비용부담
노유자 시설	1.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 2.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관련 대책 보고(국무회의, 10.11.16) - 전기추정(1층 분전반)으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대(간이SP 미설치) - 인명피해 : 사망 10명, 부상 17명 3. 추진완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 공포 : '11. 10. 28. / 시행 : '12. 2. 5. [※ 기존 시설은 시행후 2년('14. 2. 4.) 이내에 설치]) 4. 소규모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 설치 긴급지원(보건복지부), - 지원형태 : (개인시설) 국가 : 지방 : 민간(4:4:2), (법인시설) 국가 : 지방(1:1)

의료 시설	1.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심각 2. 2018.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3. 30병상 이상 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임원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⁸⁾ → 설치 기한: 기존 시설은 시행 후 3년('22.8.31.) 이내에 설치 → 설치 기한 연장: 기존 시설은 '26. 12. 31. 이내에 설치 ⁹⁾ 4. 복지부:지자체:자부담 간 매칭*으로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24년: 3: 3: 4, '25년: 2.5 : 2.5 : 5
노후 건축물	※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 건축물 한정 1.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2. 2017.12월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 3. 외벽 불연화,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건축물에 예산 지원 4.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씩 지원 5. 「건축물 관리법」 제29조의2 ¹⁰⁾

(자료: 소방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7) 조문 내용은 각주 2) 참조

8) 대통령령 제30029호, 공포일: '19. 8. 6. / 시행일: '19. 8. 9.

9) 대통령령 제33004호, 공포일: '22. 11. 29./ 시행일: '22.12.1.

10)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367호(2023. 4. 18.)]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및 제2호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¹¹⁾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예산 편성·집행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과 제2호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당 조문에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소급해서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법률(법 제13조제1항 각 호¹²⁾)에 규정하고,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12) 조문 내용은 각주 2) 참조

구체적으로 어느 소방대상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령 제13조1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령 부칙에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¹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제3항¹⁵⁾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004호, 2022. 11. 29.)」 부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음.

둘째,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법령의 개정 문제라기 보다는 예산 편성·집행, 각 주체별 비용분담 비율¹⁶⁾ 등 예산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노유자 시설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위해 이 법 시행령을 2011년에 개정하였고¹⁷⁾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하였고¹⁸⁾,

16)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각 주체별 비용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10.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8) -설치 기한: 2012. 2. ~ 2024. 2.

-설치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노유자 시설

-설치 실적: 노유자 시설 총 1,698개소 중 1,443개소(전체의 84.98%)의 노인관련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

-지원형태(설치비용 부담 형태):

· (개인시설)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 4:4:2

· (법인시설)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1:1

의료시설의 경우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2019년에 시행령에 명시하였고¹⁹⁾,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²⁰⁾²¹⁾, 보건복지부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한시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²²⁾.

19)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일 2019.8.6., 시행일 2019.8.6.)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004호, 2022. 11. 29.)」 부칙 제8조제1항

* 구체적인 내용은 각주 14) 참조

21)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9.8.6.)에서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의료공백(병실공백)과 화재저감을 위한 스프링클러설치 소급 간 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보건복지부·군병원·의료단체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3차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004호, 2022. 11. 29.)」 부칙 제8조제1항

22) 그 밖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의 경우는 소방시설법의 법적 근거 없이도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 등을 바탕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강화(완료)한 바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2024. 5월말 현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보급 설치율: 83.5%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보급 설치 현황은 [참고] 참조)

☐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편성액(보건복지부)	8.7	8.7	7.0	7.0	5.8
주체별 비용분담 비율 (복지부:지자체:자부담)	3 : 3 : 4				2.5 : 2.5 : 5

☐ 관련 부처 업무 분담 현황

○ (보건복지부)

-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예산 확보 및 조속한 집행을 통해 조기에 설치공사 완료 지원
- 스프링클러 설치 독려를 위한 복지부, 소방청, 병원협회 등 관계 기관 합동회의 및 현장 안전점검 등

○ (소방청)

- 미설치 대상에 대한 정기적 소방점검 실시, 관계자 지도·감독 및 소방 교육을 강화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관계인이 건축 당시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관계인에게는 비용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관계인의 비용부담 완화와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에 대하여까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²³⁾.

문 의 처
02)6788-5351

23) 참고로, 기존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된 소방시설법 개정법안(고동진의원안 3169, 김태년안 4069)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 소방시설 설치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참고

지방자치단체 별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4.5월말 기준)

구 분	전 체			
	소급 설치 대상	설치 완료	설치 미완료	설치율 (%)
계	2,039	1,702	337	83.5
서울	353	279	74	79.0
부산	169	150	19	88.8
대구	115	96	19	83.5
인천	96	74	22	77.1
광주	168	147	21	87.5
대전	68	61	7	89.7
울산	43	36	7	83.7
세종	2	2	0	100.0
경기	377	311	66	82.5
강원	52	44	8	84.6
충북	51	43	8	84.3
충남	68	56	12	82.4
전북	101	80	21	79.2
전남	116	98	18	84.5
경북	80	68	12	85.0
경남	166	144	22	86.7
제주	14	13	1	92.9

* (자료 출처) 17개 시도

** (소급 설치 대상) 기존 개설('19.8.6일 이전) 병원급 의료기관(정신, 요양 제외) 中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병원